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711호

2017. 10. 24.(화)
정 책 복 지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김영주 의원 등 6인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7년 9월 29일
- 회부일자 : 2017년 9월 29일

다. 상정일자 : 2017년 10월 17일

- 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영주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조항 및 문구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띄어쓰기에 따른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안 제1조)

- 「지역보건법」 제3조 ⇒ 제6조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 제3조

나. 위원회 위원 구성 대상 정비 (안 제2조)

-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 개정에 따른 정비

다. 위원회 기능 정비 (안 제3조)

-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개정에 따른 정비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위촉 해제 사유에 대한 문구 수정 및 추가 규정 (안 제6조)

- 용어정비 : ‘해촉’ ⇒ ‘위촉 해제’
- 위촉해제 사유 추가 :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임.
- 안 제1조는 인용조항인 「지역보건법」 ‘제3조’를 ‘제6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제3조’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한 것으로 타당함.
- 안 제2조는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함)의 구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 및 임명하는 위원 대상을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비한 것임.
-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비한 것임.
- 안 제5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해촉’을 순화용어인 ‘위촉 해제’로 변경하고, 위촉 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한 것임.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비한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절차 상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11
----------	-----

발의연월일 : 2017년 9 월 29 일

발 의 자 : 김영주, 이양섭, 박우양,
박종규, 윤은희, 이광희,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조항 및 문구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띄어쓰기에 따른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안 제1조)

- 「지역보건법」 제3조 ⇒ 제6조
- 「지역보건법 새형령」 제2조 ⇒ 제3조

나. 위원회 위원 구성 대상 정비 (안 제2조)

-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 개정에 따른 정비

다. 위원회 기능 정비 (안 제3조)

-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개정에 따른 정비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위촉 해제 사유에 대한 문구 수정 및 추가 규정 (안 제6조)

- 용어정비 : ‘해촉’ ⇒ ‘위촉 해제’
- 위촉해제 사유 추가 :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다.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생략함.

라. 협의 :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와 협의

마.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3조”를 “「지역보건법」 제6조”로, “제2조에 따라 충청북 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제3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한 다”를 “한다”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3 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주민 대표
3. 학교보건 관계자
4.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제2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관계공무원

제3조제1호 중 “지역내 보건의료”를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4조제3항 중 “한 다”를 “한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 해촉)” 을 “(위원 위촉 해제)”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을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임기중” 을 “임기 중”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제6조제3호 중 “질병 그” 를 “질병 또는 그” 로, “어려울 때” 를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제1항 전단 중 “처리 하기” 를 “처리하기” 로 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지역보건법</u> 」 제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충청북 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지역보건법</u> 」 제6조 ----- 제3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u>위원중</u> 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u>지역주민</u> 2. (생 략) 3. <u>보건의료 관련 전문가</u> 4. <u>보건복지국장</u> <신 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위원 중</u> -----. ③ (현행과 같음) 1. <u>지역주민 대표</u> 2. (현행과 같음) 3. <u>학교보건 관계자</u> 4. <u>산업안전·보건 관계자</u> 5. <u>관계공무원</u>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u>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u> 에 관한 사항 2. <u>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u> 에 관한 <u>사항</u>	제3조(위원회 기능) ----- -----. 1. <u>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u> -- 2. <u>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u> 에 관한 <u>사항</u>

현행	개정안
3. <u>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u> 4. (생략)	3. <u>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u> 4.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 임기)①·② (생략) ③ 제6조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u>한 다</u>.	제4조(위원 임기)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한다</u>.
제6조(위원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u> <u>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 1. <u>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타 시·도 관내로 이주한 경우</u> 2. <u>위원의 품위 손상등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u> 3. <u>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u> <신설>	제6조(위원 위촉 해제) ----- ----- <u>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제</u>----- -----. 1. ---- <u>임기 중</u> ----- ----- 2. <u>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u> 3. ----- <u>질병 또는 그</u> ----- <u>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u> 4. <u>위원이 임기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u>
<신설>	5. <u>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u>
제9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u>처리하기 위하여</u>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생략)	제9조(간사와 서기) ①----- <u>처리하기</u> ----- -----.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지역보건법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①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이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이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를 말한다. 이 경우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가 2명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1)부시장이나 행정(1)부지사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